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6
----------	-----

제출년월일 : 2000.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사유

19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 개정, 1999년 8월 6일 동법시행령 개정, 1999년 8월 9일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현행 법규에 맞도록 음식물쓰레기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안 제6조)
- 나.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기준 규정(안 제6조)
- 다.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 삭제(현행조례 제10조)
- 라. 수거·운반·보관기준 설정(안 제12조)
- 마. 시장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함
(별표1)

3. 관계법령

- 가. 폐기물관리법 제1조, 제12조, 제13조,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 나. 환경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준칙

붙임 :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1호중 “농, 수, 축산물류 폐기물과”를 “농 · 수 · 축산물류 쓰레기와”로 제2호중 “별표1 제5호의 가목”을 “별표1 제3호의 라 목”으로 제3호중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로 제6호중 “사료, 퇴비, 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를 “사료 · 퇴비 · 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1호중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을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퇴비·사료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이를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1호중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의 제2항중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를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1항중 “법 제16조제1항의”를 “법 제12조의”로 제2항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를 삭제하고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로 한다.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12조”로 한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
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항중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
량화하는 시설을”를 “자원화하는 시설을”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
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
여야 한다.

제15조의 제1항중 “제11조제2항의”를 “제10조제2항의”로 한다.

“별표 3” “별표 4”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에 대한 사항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었을
때에 시행한다.

| 별표 3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등의 설치규모

관련조항	시설명	설치규모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 : 자동상차용기 120ℓ (여건에 따라 규격변경 가능) ○ 수량 : 30세대당 1개설치 ○ 재질 :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

| 별표 4 |

과태료 부과기준**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상
폐기물 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쓰레기를 시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활용 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2조 관련)	10	20	30
		100	300	500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 고 인 사업장 규 모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쓰레기 배출예상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 일자	부산물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자가재활용 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 계획	위탁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kg/월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년 월 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감량	kg/월					
자가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제 천 시 장	년 월 일					

| 별지 제2호 서식 |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 가 감 량			재 활 용				누계
		자가 감량 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 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 용자		

| 작성요령 |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 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p>제2조(정의) (생략)</p> <p>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 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p> <p>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u>별표4 제5호</u>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p> <p>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p> <p>4.~5.(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 농·수 · 축산물류 쓰레기와 ----- -----</p> <p>2. ----- ----- ----- 별표4 제3호의 라목 ----- -----</p> <p>3.-----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1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p> <p>4.~5.(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에 맞도록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 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p> <p>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생략)</p> <p>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별표2와 같이 물기를 제거하는등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p> <p>2.(생략)</p> <p>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p>	<p>6. -----</p> <p>-----</p> <p>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p> <p>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현행과 같음)</p> <p>1. -----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p> <p>-----</p> <p>-----</p> <p>2. (현행과 같음)</p> <p>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에 맞도록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에 맞도록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p>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자원화사업자, 사료화, 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규정에 의한 사료, 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자, 비료, 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 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p>	<p>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새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2.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하여야 한다.</p>	<p>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퇴비, 사료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이를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p>	<p>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p>	
	<p>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퇴비·사료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이를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생략)</p> <p>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2.(생략)</p> <p>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조치)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③~④(생략)</p> <p>제10조(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등의 설치규모는 별표3과 같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여야 한다.</p>	<p>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현행과 같음)</p> <p>1. -----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법 제63조제3항 제2호의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 삭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에 맞도록 조정 ○ 균거조항 변경 ○ 설치규정 삭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11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그 설치규모는 별표3과 같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법 제12조의	○ 근거조항 변경
1.~2.(생략)	1.~2.(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 개선, 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 ----- < 삭제 > -----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	
제12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생략)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현행과 같음)	
제13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현행법에 맞도록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②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의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 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규정에 의한 사료, 비료생산업등록을 받은자, 사료, 퇴비로 재생이 용하는 농,축산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재활용여부등을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 재활용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③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생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납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14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생략) < 신설 >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 ----- 자원화하는 시설을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현행법에 맞도록 조정 ○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처리 예방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생략)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 ----- 제10조제2항의 -----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4> 폐기물관리법 과태료부과기준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만원)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음식물쓰레기 감 량의 무사업장으 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 는 자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 법을 위반한 우(법 제15조 관련) 가.~나.(생략)				2.----- ----- (법 제12조 관련)			■ 근거조항 변경
				가.~나.(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만원)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3.음식물쓰레기 보 관시설 또는 용 기의 설치, 개선, 대체 기타 필요 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 <u>(법 제16조제2항 관련)</u>	30	50	100	3. ----- (법 제12조 관련)	100	300	500	■ 근거조항 변경